친환경기술분야

차 례

1. 사업별(분야별)예산현황
2. 신기술보급사업추진 요령
3. 벼 분야 가. 사업현황
가. 사업현황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1)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시범
2) 쌀 품질관리 기술 시범
3) 특수 기능성 쌀생산 유통 기술 시범
4)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5) 지역특성화사업(고품질 쌀생산)
6)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
7)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 ···································
8) 경기미 가능 상품와 시험 9)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9) 더 식과재배 인시 조성 10)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
10) 경기도들인 1의 기 6 센터 인 8 11) 벼 생육조사 ····································
4. 병해충 및 기상재해 분야
가. 사업현황 ····································
1) 추진현황 요약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1)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업무능력 배양
2) 농작물 병해충 장비보강
3) 천적이용 해충방제 전문가 양성 교육····································
4) 기후온난화 대응 미기상 측정기술
5)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 ···································
6)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7)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8) 소득작물 병해충 조사(채소, 과수) ···································
9)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 및 발생정보 발표
9) 동식물 명애궁 엑질되의 및 물생정모 물표 10) 비래해충 예찰 ···································
11) 병해충 예찰결과 신속한 방제통보
12) 기술영농 종합상황실 운영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현황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	•••
	2)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
	3) 친환경농업관리실(종합검정실) 운영	•••
	4) 친환경농업관리실(종합검정실) 검정장비 보강	
	5)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 장비지원	•••
	6)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7) 친환경농업 특성화 지원	•••
	8) 시설재배지 현장 진단기술 지원	
	9) 시설채소 유기재배 단지 조성	
	[0)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	
1	[1) 친환경분야 기타보고사항	•••
	전 • 특작분야	
가	- 사업현황······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
	2)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 시범	
	3) 인삼 안전재배 생력 기계화 시범	•••
	4)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
	5)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6) 신품종 경기콩 브랜드화 시범	
	7) 전작물 저장력 향상 시범	•••
	8) 신품종 우량묘삼 확대보급	
	9) 인삼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	•••
	[0] 에너지절감형 버섯생산 시스템 구축	
	1) 민속산채 고사리재배 단지 조성	
7.	축산 분야	•••
가	· - ·. 사업현황······	•••
	·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	
	2)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	
	3)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재배 기술보급 시범	

1)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
	축사 악취저감 기술 시범
	고품질 벌꿀 생산성향상 시범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 기술 시범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활용 기술 시범
	축산물 가공육 제품 농가제조 기술 시범
11)	
12)	친환경 미생물생산실 운영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
14)	지역농업특성화사업(한우명품화)
	친환경 축산관리실 장비 지원
16)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17)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기자재지원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미생물 이용 효과 실증시험
20)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축사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
22)	항생제 대체기술 실증시범
23)	
	축사 악취제거 기술 시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시범
	가축 사양관리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효율 향상 시범
	종봉개량 보급 시범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지원
30)	고형미생물 생산 기술 실증시범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 보고
33 <i>)</i>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O =11	소 분야
	소 군아 사업현황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사업될 세구구신 요명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 관수관비재배 시범
1)	기글에고 'ö뒤시ㅇ粁 'öㄹ 친구한비세배 시듭 ''''''

2)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3)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4)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시범
5)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
6)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7) FTA대응사업(채소류재배 수급조절 및 신선편이 식품생산) ···
8) 지하수이용 냉난방 시스템 시범
9) 배기열 회수장치 시범
10) 채소류재배지 토양 품질관리 시범
11) 홍쌈추 등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 시범
12) 단동형 시설하우스 천창개폐 등 환경개선 시범
13) 5색 미니채소 재배 시범
14) 고품질 4색 단호박재배 시범
15) 채소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16)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보고
17) 채소분야 생육조사 보고
9. 화훼 분야
가. 사업현황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1)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 ···································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9) 화훼 베드재배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9) 화훼 베드재배 시범 10) 화훼 관수방법 개선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9) 화훼 베드재배 시범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4) 조직배양실 운영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9) 화훼 베드재배 시범 10) 화훼 관수방법 개선 시범 11) 화훼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11. 과수 분야 가. 사업현황
가. 사업현황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1) 탑프루트 생산 단지 육성
2)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3) 과실 수확후 종합 관리기술 시범
4) 고품질 복숭아 우산식지주 설치 시범
5)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6)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고품질 과실생산)
7)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8) 과일 비파괴 당도 선별기술 실증시범
9) 과수 우박피해 방지 시설 시범
10) 과원 늦서리 폭염극복 시설 시범
11)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
12) 포도 열과경감 기술 시범
13) 과수 지중 냉온풍활용 에너지절감 시범
14) 과일 수확후 안전출하 기술 시범
15) 3색 포도단지 조성
16)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보고
17) 2007 ~ 2009년도 추진 저장관련 시범사업 성과보고
18) 2008 ~ 2009년도 추진 도비 시범사업 결과보고 ····································
19) 과수분야 생육조사
20) 과수분야 신기술보급 실적보고
19 프무벼노러이러그ㅁ이 으셔
1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
가.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
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
3)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3.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
가 사업 익바혀화
나. 사업 추진 요령
14. 2010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선발
15. <mark>농촌진홍기관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 도입</mark> ·······

15. 농촌진흥기관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 도입 분야

*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지방농촌지도사 엄미옥 031-229-5875)입니다.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란?

새기술 시범 및 녹색기술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 단계까지의 농산물에 대하여 농가나 단지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기술지원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기술지원한 농산물" 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목 적

○ 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지원한 농산물의 공동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촌진흥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농촌진흥기관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 표시제"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우선실시
 - 2010년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시범사업 확대 검토
- 공동표시제 적용 시범사업 시범요인에 따른 품질 관리 철저
 - 생산, 관리, 수확, 유통 등 영농단계별 정밀관리 기술지도
-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 표시제 업무표장 출원(특허청)
 - ※ 출원→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업무표장 등록 (업무표장은 등록전에도 사용가능)

□ 추진내용

- 시 기: 2010년~
- 적용대상 : 개소당 5천만원 이상의 국비 시범사업 우선실시 후 확대
- 방 법
 - 시범사업 단지 설치 후 시범요인을 준수하여 고품질 생산지도한 농산물 출하박스 등에 농산물 공동표시제 적용

- 새기술 시범요인, 출하, 유통과정 등에 관한 철저한 지도
-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농산물 표시제 사용권한 부여
- 기술지원 공동 표시제 이용 농산물 업무표장 엄격관리
 - 업무표장 이용 위반시 5년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농산물 표시제 관리를 위한 공무원 지정 운영
 - · 업무표장 사용 실적을 매분기 또는 상·하반기 실적 파악 <업무표장>



- **전체형상**은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마크로서 안전한 농산물임과 농촌진흥기관의 신뢰도 상징
- 원의 가운데 **나뭇잎**형상은 자연을 상징하며 안전한 농산물임을 농촌진흥기관이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함으로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신뢰도 표현
 - -원아래 **녹색**은 **자연**을 원 안쪽의 형상은 **기술을 표현**하고자 **인간의 손** 형상
- 전체 원의 **청색**은 **농촌의 희망**을 상징하며 **농업인의 의식선진화**를 통한 자생을 의미하고, **주황색**은 **도시를 상징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 공생을 상징, **연두색**은 **농촌**을 상징하며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상생한다는 의미

□ 보고사항

○ 판매실적 보고 : 하작물('10. 12. 20일한), 동작물('11. 7. 20일한)

시군	시범사업명	품목	표 시 제 이용실적	판매량	금 액	비고

- 농산물 공동표시제 이용시 문제점 개선대책
- 우수사례

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 지원한 농산물 공동 표시제 이용 관리방안

1. 목적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농촌진흥청이 소유한 표시제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법

□ (대상 농산물)

일정규모 이상의 시범사업(5천만원 이상)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등록한 "기술지원농산물 공동표시"를 우선 실시 후전체사업으로 확대하되 지역 브랜드 표시와 마찰이 우려될 경우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게 협의 운영토록 한다.

□ (표시방법)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공동 표시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등록된 **업무표장**을 사용토록 한다.

□ (사용신청)

- ①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시군의 심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품목, 사용기간, 해당 작목 품질기준 준수, 생산계획, 단지명, 참여농가수 등을 표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기술지원 농산물공동표시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산물공동표시제 사용을 원하는 농가나 최근 2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통하여 농산물공동표시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다.

□ (관리)

①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농산물공동표시 업무표장**을 사용할 경우시범사업 매뉴얼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에 한하여 기술지원 표시를 포장재에 사용토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범사업 농산물에 대하여도 농산물 표시내용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방법)

- ① 농산물 표시제에 사용되는 포장재료에 대한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농산물표시제는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 사용하되 붙임 1을 참고하여 등록된 업무표장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

□ (책임)

기술지원 농산물 표시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단지나 농업인은 해당지역의 브랜드 명성이나 시범사업 표시제 사용시 승인 품목에 대한 품종, 품질, 유통, 수확후 관리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사용실적 보고)

업무표장을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농산물 출하실적과 추진상황을 하작물은 당해년도 12. 20일까지, 동작물은 익년도 7. 20일까지 별표 1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토록 한다.

협약 체결	 > 농업인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농촌진흥청 협약 체결 - 협약서 제출(농업인·센터 → 도 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 도원과 진흥청간 실무검토 및 계획서 보완 -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약 체결(단 특별한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해약할 수 있음) 		
$\overline{}$			
연구개발비 지급	>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기관 계좌로 연구개발비 입금*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과제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		
_			
연구과제 수행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의거 연구사업 추진 연구개발비의 비목간 20% 이상 변경 사용하고자 할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단 간접비는 증액할수 없음) 기자재 등 물품구매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시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 담당자와 농업인이 공동 검수사업비 집행서류는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 연구책임자(농업인)는 연구개발 시험일지를 작성 비치 		
<u> </u>			
현지기술 지원 (연구 진행단계)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농업인)의 연구과제수행 기간 동안 필요시 방문 기술지원(현장지원반 구성 등) 도 단위 전문가의 현지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은 총괄책임자 요청시 수시로 기술지원 실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 수행 중에 현지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속 本 공개평가 실시(내・외부 전문가 그룹 구성) - 연구성과가 불량한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u> </u>			
	○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연구개발 종료전 공개결과평가 실시 ○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록 및 제촐		
	* 최종보고서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에 각 1부 제출		

	○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	사용실적 보고			
	-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부정적			
	집행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단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 부여)			
	*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여 집행			
	○ 최종보고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게재			
	○ 연구성과 홍보 및 현장적용(농업인, 지도기관 등)			
어그서키이 하요 ㅂ그	○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활용・보급	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성과활용			
(연중 계속)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 현장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은 우수과제는 시범			
	사업화 적극 지원			

□ 기 타

○ 2010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